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발제: 박아름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목차

1.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4. 감염병 예방조치 관련
5.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관리감독 관련

# 1.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 현행 법 제2조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감염병의심자'의 경우에도

- 시설치료,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따를 의무가 있고 (제41조 제2항 3호 및 제4항),
- 자가격리/시설격리, 자가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수집, 감염여부 조사등의 강제처분 대상이 되며(제42조 제2항),
- 일정 기간 입원·격리를 시킬 수 있고(제47조 제3호).
- 개인정보(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카드사용기록 등) 및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함(제76조의2).

⇒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 1.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 개정제안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목 및 다목에서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접촉·노출의 시간 및 거리는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신체적으로 접촉하였거나 감염병환자등과 일정한 거리 내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일정한 거리 내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 현행 법 제34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밑줄 부분은 2020. 9. 29. 개정 시 추가됨)

### 법 제34조의2 제1항 단서 개정제안

“다만, 정보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감염병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별·나이·직업·국적 등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는 공개되는 정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추가
- ⇒ 정보 공개 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 확대
- ⇒ 포괄위임 금지(현재 대통령령이 없는 상태)

## <참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후략)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 현행 법 제34조의2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조항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설됨)

### 추가조항 신설제안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개되는 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견을 정보 공개 시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 현행 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만 가능함

⇒ 개정안에서는 공개되는 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전설명의무 조항 신설

##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현행 법 제34조의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제안
⑤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감염병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할 때 이를 따라야 한다.

### <개정내용>

⇒ 현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별로 제시하는 '정보공개 지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범위 및 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

##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 현행 법 제34조의2 내 추가조항 신설제안

○ 정보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정내용>

⇒ 정보공개 관련, 법 위반 시 불이익 조항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참고함)

## 2.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 공개 관련

### <토론거리>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정보공개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으로만 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됨.

⇒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주체를 어느 범위로 설정해야 하는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VS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현행 법 제76조의2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개정제안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개정내용>

- ⇒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수집 규정을 별도로 하는 방안
- ⇒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 포괄위임 금지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현행 법 제76조의2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제안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활용 및 다른 방법으로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 ⇒ 보충성 요건 추가
- ⇒ 경찰관서 경우 규정 삭제
- ⇒ 위치정보 수집대상을 감염병환자등으로 제한(감염병의심자 삭제)
- ⇒ 사업자들의 통지의무 추가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현행 법 제76조의2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제안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수집의 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질병관리청장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 시 사용용도 제한

⇒ '업무 종료 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현행 법 제76조의2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개정제안 (동 조항의 제4호 및 제5호 추가)

4. 수집된 정보가 파기 완료된 사실
5. 수집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현행 법 제76조의2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개정제안

⑧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개정내용>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 시에도 적용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법 제76조의3 신설제안 - 감염병의심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율 (제76조의2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

제76조의3(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의심자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심자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감염병의심자의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4. 수집된 정보가 파기 완료된 사실
5. 수집된 정보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관련

## <토론거리>

- 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의료적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의심자에게 검사 안내를 위한 정보 등 다양한 범주가 존재하므로, 각 정보의 수집목적 및 특성에 따른 정보의 보관기간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상하여 법에서 일률적인 규율을 하기는 어려움.  
⇒ **정보 수집자들이 각 정보의 수집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정보 수집 목적의 달성 후 정보 파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4. 감염병 예방조치 관련

## 현행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후략)

## 개정제안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략)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개정내용>

⇒ **예방조치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 **출입자 명단 작성 삭제**

**(또는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후 관리감독 강화)**

# 5.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관리감독 관련

## 신설제안

제0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의5, 제42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 <참고>

제40조의5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2조 제2항 제2호: 자가격리자의 위치수집

제76조의2 : 정보제공 요청 및 위치정보 수집 등

**감사합니다.**